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 교육 주 상대 이의 해결 절차

PART B

I. 권한

- A. 미 연방 규정(34 CFR §300.151 이하 참조)
- B. 메릴랜드 주 규정(COMAR 13A.05.01.15A)

II. 목적

- A.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해당 연방 및 주 법과 규정 하에 제기된 이의를 해결하는 데 다음 이의 조사 절차를 채택합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미 연방 규정(34 CFR §300.153)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 제기된 모든 이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 B. 적절한 추가 집행 조치의 수행 및 기술적인 지원 제공을 비롯하여 시정 조치의 순응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이의 조사의 결과로 발생한 시정 조치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III. 이의 요건

메릴랜드 주 이외 지역 출신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하 "고소인")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접수된 이의가 아래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 내의 다른 부서나 주 또는 연방 공무원을 통해 접수된 이의를 해결합니다.

- A. 고소인은 주 상대 이의 양식(State Complaint Form)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양식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웹 사이트(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Divisions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로 이동한 다음 이의 조사 및 적법 절차 심의국(Complaint Investigation and Due Process Branch)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또는 410-767-7770으로 전화하여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없지만 이의가 아래 설명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양식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이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이의는 다음 주소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Assistant State Superintendent,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

- C.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립 교육 기관에 이의의 사본을 전송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 부서장(Director of Special Education)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관리자 앞으로 이의를 전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 D. 이의는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아래 III 조의 E에서 J항(Section III, paragraphs E through J) 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서명된 이의일 경우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해결합니다.

- E. 이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1. 공립 교육 기관이 장애인 교육법 요건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진술
 - 2. 위 진술이 기반으로 하는 사실(고소인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 3. 고소인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4. 특정 학생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고소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학생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 b.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 c. 집이 없는 학생의 경우, 사용 가능한 학생의 연락처 정보 및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
- d. 학생의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비롯한 학생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 e. 이의가 제기된 시점에서 당사자에게 알려진 범위 및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문제의 해결책 제시

F.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서 이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만을 이의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G. 공립 교육 기관이 장애인 교육법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진술은 학생에 대한 장애 식별, 평가, 학교 배치 또는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제공뿐 아니라 공립 교육 기관이 장애인 교육법과 해당 연방 규정 또는 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기타 모든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립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회의 결정으로 지시된 필요한 조치를 구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됩니다. 타협 합의서, 조정 합의서 및 문제 해결 회의의 결과로 도달된 합의서는 관할 구역의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지만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서 이의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H. 이의가 본 절차의 III조 A에서 J항(Section III, paragraphs A through J) 사이에 요약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이의가 규정 및 본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시한 통보를 보냅니다.

- I. 특정 학생을 대신하여 이의가 제기되고 고소인이 학생의 부모가 아닌 경우, 고소인이 학생의 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해결책과 결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학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메릴랜드 주 교육부가 고소인에게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동의가 제공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IV. 이의 조사 절차

- A.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이의를 접수하면 팩스로 지정된 공립 교육 기관 직원에게 이의를 전송합니다.
- B. 고소인과 공립 교육 기관에게는 이의가 접수되었고, 주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문제 해결 일정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주장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며, 해당 이의 해결에 지정된 메릴랜드 주 교육부 직원을 명시하는 서면 통보가 제공됩니다. 서면 통보에는 공립 교육 기관이 고소인에게 고소장에 제시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진술도 포함됩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당사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의견 불일치의 조정을 합의하거나 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이의 해결 방법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 C. 지정된 학년도에 서면으로 된 첫 번째 이의를 접수하게 되면, 이의가 제기된 공립 교육 기관은 고소인에게 절차상 보호 규약 사본을 전송해야 합니다.
- D. 이의의 대상이 되는 공립 교육 기관은 해당 학교 시스템 직원과 주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학교 시스템에서 주장에 응할 경우 주장된 각 위반 사항을 언급하고, 공립 교육 기관에서 확인한 사실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 조치를 제시하거나 해당 학생이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위반 사항이 비슷한 입장의 다른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은 그러한 학생들이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 E.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 F.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고소인과 공립 교육 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판결(평결문)을 발행합니다.
1. 조사한 주장에 대한 진술
 2. 주 법이나 연방 법 및/또는 규정 위반 사항 발생 여부에 대한 진술과 결론에 대한 이유를 비롯하여 조사된 각 주장에 대한 결론과 사실 관계 확정
 3. 메릴랜드 주 교육부가 주 법이나 연방 법 및/또는 규정 위반 사항 발생을 확인한 경우, 평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공립 교육 기관이 취해야 할 시정 조치가 포함됩니다.
 - a. 서비스 거부 문제를 개선할 방법. 경우에 맞게 재정적 보상 또는 학생에게 필요한 기타 시정 조치가 포함됨.
 - b.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한 적절한 후속 서비스 제공
 4. 시정 조치 이행 일정
 5. 시정 조치 이행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메릴랜드 주 교육부 담당자
 6. 당사자들이 메릴랜드 주 교육부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이의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진술
- G.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서 이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역일 기준)에 평결문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늦게 발행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정 이의와 관련된 예외 상황이 존재하거나 관련 고소인 및 공립 교육 기관이 조정 또는 분쟁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위해 기한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 일정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고소인과 공립 교육 기관에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H. 한 당사자가 평결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는 *조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었거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추가 정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평결문의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역일 기준)에 제출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제출된 추가 정보에 조사의 결과로서 도출된 결론을 재검토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정보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도출된 결론의 재검토 결정과 최종 결정이 도출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시정 조치의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V. 메릴랜드 주 교육부 권한 밖의 이의

- A. 인종, 신념, 성별, 나이, 피부색, 출신 국가, 혼인 상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특수 교육법 또는 규정 이외의 규정과 법에 명시된 행위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한 주장이 이의에 포함되는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해당 교육부의 조사 권한 밖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해당 통보에서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고소인에게 이러한 특정 주장에 해당하는 관할 기관의 이름과 주소가 알려졌을 경우에 이를 제공합니다.
- B.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조정 또는 문제 해결 회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구현되지 않은 주장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모든 이의는 관할 구역의 주 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C. 적법 절차 심의회의 대상인 이의나 하나 이상의 주장이 심의회에 해당되는 다수의 주장을 포함하는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심의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의 모든 이의를 유보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회 이의에 속하지 않는 이의의 주장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이의 절차 및 해당 일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주장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의 절차를 통해 해결될 주장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D. 동일한 당사자들이 연루된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이전에 결정된 주장이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 제기된 이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심의회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고소인과 공립 교육 기관에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알립니다.

VI. 이의 해결

이의가 조정 또는 기타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공립 교육 기관에서 만족스럽게 처리되었거나 고소인에 의해 철회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하면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이의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공립 교육 기관이 개인 또는 조직이 고소장에 제시한 구제책의 제공을 제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VII. 검증 활동/이의 후속 조치

메릴랜드 주 교육부에서 연방 법 또는 주 법이나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평결문을 발표할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공립 교육 기관에게 시정 조치의 이행을 검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A. 평결문에 의거하여 당사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의 이행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기술 지원 요청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B. 공립 교육 기관은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위해 메릴랜드 주 교육부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 C. 메릴랜드 주 교육부 직원이 수행된 방법을 검토하고 요구된 조치를 만족시켰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1. 수행된 방법이 시정 조치를 만족시킨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의를 종결합니다.
 - 2. 공립 교육 기관이 취한 조치가 확인된 문제를 만족스럽게 시정하지 못한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공립 교육 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여 수행된 조치가 요구된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결정합니다.

3. 공립 교육 기관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데 선의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본 절차에 지정된 대로 서면 집행 제재 통지를 공립 교육 기관에게 보냅니다.

VIII. 집행

공립 교육 기관이 평결문에 지정된 날짜 또는 본 절차의 VII조(Section VII)에 의거해 허가된 연장 날짜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메릴랜드 주 규정(COMAR 15A.05.02.07)에 의거하여 집행 조치를 실시합니다.

IX. 대중 인식을 위한 노력

- A. 공립 교육 기관은 절차상 보호 규약을 비롯한 본 이의 절차를 학부모, 변호사 및 교직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B.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본 이의 절차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변호 단체, 공립 교육 기관 직원 및 본 이의 절차가 필요한 기타 모든 이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Maryland Disability Law Center, Parents' Place of Maryland, Maryland Coalition for Inclusive Education, Community Mediation Maryland 및 ARC/Maryland 등을 통해 변호 단체와 학부모 단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메릴랜드 주 교육부 웹 사이트에도 명시합니다.

IDEA Part B Grant #HO27A070035A에 근거해 메릴랜드 주 교육부 산하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 미 교육부 산하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청의 지원을 받음. 이 문서에 표현된 관점은 미 교육부 또는 기타 모든 연방 기관의 관점과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에서는 미 교육부 산하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청,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없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복사 및 공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복사 및 공유 시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가 출처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종교 또는 장애 여부를 근거로 고용이나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주 교육부 정책에 관한 질문은 평등 보장 및 준법 감시국(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전화: (410) 767-0433 또는 팩스: (410) 767-0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요청 시 장애인용 문서로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전화: (410) 767-0858 또는 팩스: (410) 333-1571)로 문의하십시오.